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 노약자·장애인 등의 특성 반영〉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65호)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구자근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1. 6.
3. 회 부 일 : 2026. 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 유형이나 중증도에 따라 조사방법이 달라져야 함에도, 선거여론조사기준에는 이와 관련한 조사방법이 열거되지 아니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노약자·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이 손쉽게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방법이 포함하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8제6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선거 여론조사의 기준에 노약자·장애인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이 손쉽게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구자근의원안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 ⑤ (생략) ⑥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 ⑭ (생략)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u>확보하고 노약자·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조사자의 여론조사 접근성을 높이기</u> ----- ----- ⑦ ~ ⑭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대상의 대표성 확보, 피조사자에 대한 응답 강요의 금지, 조사 방식의 다양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구성 비율 설정 등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있음.

[선거여론조사기준(일반기준)]

신뢰성과 객관성	
1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u>객관적이고 공정하게</u> 이루어져야 한다.
2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u>대표성을 확보</u> 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누구든지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u>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 추출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5	누구든지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누구든지 과다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본의 크기가 다음 각 호의 수보다 작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u>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8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u>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9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u>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u> 하여야 한다.
10	전화조사의 경우,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100분의 70 이상 응답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누구든지 유선전화만을 사용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중값 배율	
1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구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을 밝혀야 하며, 가중값 배율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별 : 0.7~1.5 -연령대별 : 0.7~1.5 -지역별 : 0.7~1.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만, 현행 선거여론조사기준이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조사 참여가 곤란하거나 조사방법의 적합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온바,

특히 장애 유형 및 중증도 등에 따라 조사 응답 방식의 선택 가능성, 조사 문항 제시 방식, 의사소통 보조의 필요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동일한 조사설계가 모든 피조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동일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못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현행 여론조사 방식이 주로 음성 또는 ARS 방식의 전화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경우 조사 참여 자체가 곤란하여 그 의사가 여론조사에 충분히 표집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¹⁾

이에 개정안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설정·공표하는 목적에 노약자·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접근성 제고를 명시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 기준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취약집단의 조사 참여 여건을 제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단순히 조사 실시 단계에서의 편의 제공을 넘어, 조사 설계의 기본 원칙에 접근성 요소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은 신체적·인지적 특성, 정보접근 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조사 방식에 따라 응답 참여 자체가 제한되거나 응답의 정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바, 조사 문항 제시 방식, 응답 수단의

1) ‘청각장애인 위해 총선 여론조사 방식 바뀌야’(에이블뉴스, 2020.01.02.)

다양화, 의사소통 보조수단의 활용 등 구체적 설계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노약자·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조사자의 여론조사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경우, 현행 전화조사 방식 외에 대면조사나 온라인 조사 등 다양한 조사방식의 병행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어 조사기관의 인력·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조사 실시를 의뢰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은 노약자·장애인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의 하위 법령 제·개정 권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대통령령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은 접근성 제고의 취지를 유지하되, 기준의 적용 범위와 방식이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위임 형식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청각 및 언어 장애인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선거여론조사 참여를 보장하려는 종국적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화·인터넷·대면조사를 병행하도록 하는데, 이는 선거여론조사 관련 비용의 증가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정당, 후보자 등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